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교육부장관이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교육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4에 따른 실태조사에 학생의 마약류 중독·오남용에 대한 실태조사와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에 대한 효과성 평가가 포함되도록 적극 협력하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II. 검토의견

안 제9조의3제2항에서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교의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중독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이를 보건교육, 학교안전교육¹⁾,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²⁾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①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는 해당 교육들은 규정 상 또는 실질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고 있는 교육이고 마약중독예 방교육도 실질적으로는 학교의 장이 실시하게 되는 교육이므로 교육 부와 협의하여 이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신 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마약중독예방 교육 추진계획에 따라 「초·중등교육 법」 제2조에 따른 <u>학교에서</u> 모든 학생 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 방교육(이하 “마약중독예방교육”이라 한 다)을 체계적으로 <u>실시하여야</u> 한다. 이 경우 마약중독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학교안전교육 3. 「아동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아동 의 안전에 대한 교육	② ----- ----- <u>학교에서 학교의 장이</u> ----- ----- <u>실시하도록 하여야</u> -----. -----. 1. ----- 2. ----- 3. -----

또한, 안 제9조의3제5항에서는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의 수립 절차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해당 추진계획은 제1 항에서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시행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다수의 입법례³⁾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대통

2) 「아동복지법」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대상이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인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장, 같은 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제1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3) 「학술진흥법」 제12조(학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① 교육부장관은 학술 관련 인력, 정보,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학술표준분류체계를 세우고 학술표준분

령령으로 위임할 필요⁴⁾가 있다고 보았으며 이를 주서에 반영함.

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주서본 참조).

(전문위원 이 화 실)

류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학술표준분류표를 널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학문 분야별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학술표준분류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키도록 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학술표준분류표의 작성,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 ① 교육부장관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방향 및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특수외국어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의 특수외국어 교육에 대한 지원 방안
7.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2024 법제기준과 실제 35P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소관사항 예시, 국회사무처 법제실

○ 법률의 소관사항

① 헌법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한 사항, ②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 대통령령의 소관사항

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② 법률의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정의 통일적 추진·집행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④ 여러 부처에 공통되는 사항, ⑤ 행정기관의 내부조직에 관한 사항

○ 총리령·부령의 소관사항

① 법률·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 ② 법률·대통령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각 부처가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항, ④ 복제·서식 등과 같은 절차적·기술적 사항